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근로기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김문수 (고용노동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「근로기준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임신 초기(11주 이내)에 유산·사산한 여성의 건강회복에 충분한 휴식 기간 부여하고 근로자와 공무원(임신기간 11주 이내인 경우 10일의 휴가 부여)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, 임신기간 11주 이내의 유산·사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가.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유산·사산휴가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(안 제43조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 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3조제3항제1호 중 “11주”를 “15주”로, “5일”을 “10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산·사산휴가의 적용례) 제4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3조(유산·사산휴가의 청구 등) ①·② (생략) ③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·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·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. 1.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(이하 “임신기간”이라 한다)이 <u>11주</u>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<u>5일</u> 까지 2. 임신기간이 <u>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</u> 3. ~ 5. (생략)	제43조(유산·사산휴가의 청구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----- ----- ----- -----. 1. ----- ----- ----- <u>15주</u> ----- ----- <u>10일</u> ----- -- <u><삭 제></u> 3. ~ 5.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7476